

대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다2680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다26800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9 선고 2022나20391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2. 1. 27 선고 2020가소55345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정

피고(상고심당사자) 파주시

피고, 피상고인 서울특별시

판결 선고 2022. 11. 30.

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9. 선고 2022나203911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. 소액사건으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주 심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오경미